

정관

본 정관은 2025년 3월 26일 현재의 정관입니다.

주식회사 다우기술
대표이사 김 윤 덕

정 관

제 1장 총 칙

제 1조 (상 호)

당 회사는 株式會社 多佑技術이라 한다. 영문으로는 DAOU TECHNOLOGY INC. 라 표기한다.

제 2조 (목 적)

당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프로그램 미디어 제조업
- 2) 컴퓨터 조직 및 프로그램 개발업
- 3) 컴퓨터 정보처리 관련 교육 및 자문업
- 4) 전자기기 판매 및 용역업
- 5) 기계류 판매 및 용역업
- 6) 전자기기 부품판매 및 용역업
- 7) 수출입업
- 8) 물품매도확약업
- 9) 정보처리 컨설팅
- 10) 소프트웨어 제품판매
- 11) 전산업무 개발 용역
- 12) 전산기기 개발 및 판매
- 13) 부동산 임대업 및 관리업
- 14) 전자상거래 및 인터넷 관련 사업
- 15) 부동산 분양 및 개발업
- 16) 전기통신업(유·무선 통신업, 통신중계 및 방송전송, 부가통신업 및 컴퓨터 및 통신기기를 이용한 정보자료처리 및 정보통신서비스업을 포함)
- 17) 소프트웨어(게임소프트웨어 포함) 및 콘텐츠 기타 저작물의 개발, 판매, 임대업
- 18) 광고대행업
- 19) 정보처리 및 통신기술에 관한 전문적서비스, 교육훈련서비스, 통신교육 및 컴퓨터학원등 기타 교육기관업
- 20) 컴퓨터와 이에 관련되는 기기의 판매, 임대(스튜디오/방송장비포함), 수리업
- 21) 정보산업에 관한 서적 출판업
- 22) 음반 및 기타기록매체 출판업

- 23)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및 관련업(컴퓨터시스템 설계, 감리 및 자문업, 소프트웨어자문, 개발 및 공급업, 자료처리 및 컴퓨터 시설관리업,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포함)
- 24) 시스템통합구축서비스의 판매업
- 25) 별정통신사업
- 26) 결제대금예치업
- 27) 지불 게이트웨이, 수납 및 지불대행업
- 28) 16) ~ 27)호에 관련되는 수출입업 및 同대행업, 기술용역, 전기통신공사업, 전기공사업 등 제반사업
- 29) 네트워크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및 구축업
- 30) 멀티미디어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및 구축업
- 31) 통신장비, 통신기기 및 부품 도 · 소매업
- 32) 통신판매업
- 33) 상품권 발행, 유통, 판매, 판매대행업
- 34)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 35) 직불전자지급 수단 발행 및 관리업
- 36) 도메인등록 대행업
- 37) 부가통신 대리점업
- 38) 구매대행 및 공동구매업
- 39) 창고 및 물류업
- 40) 상품종합 도매업, 중개업
- 41) 기타상품 중개업
- 42) 기타통신 판매업
- 43) 멤버십 포인트 관리 및 이를 이용한 서비스 제공 사업
- 44) 멤버십 포인트 가맹점, 제휴사 유치업
- 45) 쿠폰 및 물품 등의 유통, 판매, 판매대행업
- 46) 위치정보 수집 및 서비스 제공 사업
- 47) 마케팅대행업
- 48) 고객센타대행업
- 49) 그외 기타 분류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
- 50) 태양광발전 전력생산 판매업
- 51)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 52)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 53)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 54)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 55) 대출모집업
- 56) 신용정보제공 이용업

- 57) 화물 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 58)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 59)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 60) 가공식품 판매업
- 61)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 62) 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제 3조 (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 ① 당 회사는 본점을 경기도 성남시내에 둔다.
- ② 당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지점, 사무소 및 출장소,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4조 (광고방법)

당 회사의 광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daou.co.kr>)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에 게재한다.

제 2장 주 식

제5조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주로 한다.

제6조 (일주의 금액)

당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금오백원으로 한다.

제7조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당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10,000주로 한다.

제8조 (주식의 종류)

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제8조의2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당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 한다.

제9조 (우선주의 수와 내용)

- ① 당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의결권 없는 것으로 하며, 그 발행 주식의 수는 25,000,000주로 한다.
- ②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년1%이상 15%이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률을 정한다.
-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단순참가시켜 배당한다.
- ④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 ⑤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의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 ⑥ 이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 ⑦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발행시 이사회가 정하고 존속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제10조 (주식의 발행 및 배정)

- ① 당 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 ②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3. 상법 제340조의2 및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에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주를모집하거나 모집을 위하여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9. 재무구조 개선 등 긴급한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호에서 정하는 자에게 발행하는 경우
 10.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 ④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에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또한 회사가 신

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도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⑤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이 경우 신주의 발행가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8의 규정에 정하는 가격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⑥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10조의2 <삭제>

제10조의3 (주식매수선택권)

- ① 당 회사는 임직원(상법 시행령 제30조에서 규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의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목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 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
- ② 제1항 단서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는 당 회사의 이사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 경영, 해외영업 또는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 ④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제 8조의 주식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⑤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이 되는 임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직원의100분의 99를 초과할 수 없고,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10을 초과할 수 없다.
- ⑥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높은 금액
 -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2.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한 주식의 실질가액

- ⑦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주주총회 결의일 또는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8년 내에서 각 해당 주주총회 또는 해당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행사 만료일까지 행사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문의 규정에 의한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⑧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 1.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 2.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0조의4 (동등배당)

당 회사는 배당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제10조의5 (우리사주매수선택권)

-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 ②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 ③ 조합원별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은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연간 6백만 원(행사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 ④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6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로 그 기간 중 또는 그 기간 종료 후 일정한 행사기간을 정하여 권리를 행사하게 할 수 있다.
- ⑤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이 정

하는 평가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로서 행사가격이 당해 주식의 권면액보다 낮은 때에는 그 권면액을 행사가격으로 한다.

- ⑥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 1.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우리사주조합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 2.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3. 기타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⑦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당해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까지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그 행사기간 동안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1조 (명의개서대리인)

- ① 당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 ③ 당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한다.
-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이 정한 관련 업무 규정에 따른다.

제12조 (주주명부 작성·비치)

- ① 당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② 당 회사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기준일)

- ① 당 회사는 매 결산기 최종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그 권리를 행사하게 한다.

- ② 당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장 사 채

제14조 (사채의 발행)

- ① 당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14조의2 (전환사채의 발행 및 배정)

- ① 당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000,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1. 제10조 제1항 제1호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2.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3.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4. 제10조 제1항 제1호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6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6. 재무구조 개선 등 긴급한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하는 자에게 발행하는 경우
- ② 제1항 제4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③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그러나, 이사회는 주주의 주식소유비율에 따라 전환사채를 발행한 경우 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전환사채를 발행한 후 사채의 액면총액이 25,000,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가하락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최저한도를 액면가액까지 할 수 있다.
- ⑤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공모의 경우 1월, 사모는 1년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서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⑥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회사는 전환 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자에 대하여만 이자를 지급한다.

제15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배정)

- ① 당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000,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제10조 제1항 제1호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제10조 제1항 제1호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6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

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6. 재무구조 개선 등 긴급한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하는 자에게 발행하는 경우.

② 제1항 제4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가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방식

③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그러나, 시가하락 등에 의한 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의 조정은 제14조의2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⑤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후 공모의 경우 1월, 사모는 1년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가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의2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당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 한다. 다만, 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상장사채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6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1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장 주 주 총 회

제17조 (소집시기)

- ① 당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임시 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18조 (소집권자)

-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 ② 대표이사가 유고 시에는 제34조의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 (소집통지 및 공고)

-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②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매일경제와 서울경제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 1항의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20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21조 (의 장)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 ② 대표이사가 유고 시에는 제34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그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행을 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3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4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제한)

당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25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 ①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6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28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5장 이사 이사회 감사

제29조 (이사 및 감사의 수)

- ① 당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한다.
- ② 당 회사의 감사는 1명 이상으로 하되 그 중 1인 이상은 상근으로 할 수 있다. 단, 상법 제542조의10 규정에 따라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 1인 이상을 상근으로 한다.
- ③ 이사는 상임이사와 사외이사로 구분하되, 사외이사의 수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29조의2 (사외이사의 성실의무)

사외이사는 회기일에 이사회에 참석하는 등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 비밀을 재임 중은 물론 퇴임 후에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0조 (이사 및 감사의 선임)

- ①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② 이사와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 ③ 감사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④ 회사는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도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1조 (이사 및 감사의 임기)

- ①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사외이사의 연임 시 임기는 1년 이내로 하고 연속하여 5년을 초과 재임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 ②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 ③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주주총회에서 달리 정하지 않은 한 선임일부터 기산한다.

제32조 (이사 및 감사의 보선)

- ① 이사 또는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29조에서 정하는 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사외이사가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29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3조 (대표이사 등의 선임)

이 회사는 이사회회의 결의로 대표이사, 부사장, 전무 및 상무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다.

제34조 (이사의 직무)

- 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사장, 전무, 상무 등은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 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4조의 2 (이사의 보고의무)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의 3 (이사, 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

- ① 이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 또는 감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 ② 이사 또는 감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상법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5조 (감사의 직무)

- ① 감사는 당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③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⑤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⑥ 제5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⑦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제36조 (감사의 감사록)

감사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감사록에 기재하고 그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37조 (이사회 구성과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 ②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이사회를 소집하는 이사는 이사회 회일 7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37조의 2 (이사회 내 위원회)

이사회는 회사의 필요에 따라 감사, 사외이사후보추천, 보수, 경영, 운영, 재무, 기술, 평가위원회 등 각종의 위원회를 이사회의 내부에 설치할 수 있다.

제38조 (이사회 결의방법)

- ①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 및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 ② 이사회 의장은 제37조 제2항의규정에 의한 이사회 소집권자로 한다.
- ③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④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39조 (이사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에 비치한다.

제40조 (이사 및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 ①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이사와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은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 ②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제41조 (상당역 및 고문)

당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상당역 또는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6장 계 산

제42조 (사업년도)

당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01월 0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3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등)

- ① 당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 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 ②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 ④ 대표이사는 제1항 각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⑤ 당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제43조의 2 (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44조 (이익금의 처분)

이 회사는 매사업년도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44조의2 (주식의 소각) 〈삭제〉

제45조 (이익배당)

-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 ③ 당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5조의2 (분기배당)

- ① 당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 말일부터 45일 이내의 이사회 결의로써 금전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에 의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 ② 당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써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③ 분기배당을 할 경우에는 제9조의 우선주식에 대하여도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
- ④ 분기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액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4.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5.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 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6. 분기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7. 당해 영업년도 중에 분기배당이 있었던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

제46조 (배당금지청구권의 소멸시효)

-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제47조 (준용규정)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주주총회 결의와 상법 및 기타 법령에 따른다.

제48조 (세칙내규)

당 회사 업무추진과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칙과 내규는 이사회에서 결정 시행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은 1986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은 199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은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은 1994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은 199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에 관한 적용례)

제14조 및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정관시행일 이후 발행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은 199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2항 개정규정은 1997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은 1998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본 정관은 1999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 제3항은 1999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00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1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2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3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4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3조 1항은 2010년 3월 20일부터 시행하며, 제 4조는 2010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 5항~7항, 제34조3, 제38조 1항 4항, 제43조1항의3 5항, 제44조의2, 제45조 1항는 2012년4월15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8조의2, 제11조, 제12조, 제15조의2 및 제16조 개정내용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3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4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5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